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1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 21.(화)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. 21. (화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조호정 사무관(044-203-5888) 이은주 주무관(044-203-5887)

무역위원회, 「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」 조사 개시 및 「과자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제396차 무역위원회 개최('20.1.21)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**'20. 1. 21.(화) 제396차 회의**를 개최하여 **「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」** 불공정무역행위 **조사 개시**와 **「과자 상표권 침해」**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**판정**을 하였음

【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】

□ 「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,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(Wyeth LLC)가 국내 기업 '가' 및 '나'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**불공정무역에 해당**된다고 **주장**하면서 **조사를 신청**하였음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, 국내기업 '가' 및 '나'가 제조·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**특허권을 침해**하여 수출한 **혐의**가 있다고 판단되어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**를 **결정**하였음

○ 향후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(신청인, 피신청인)로부터 **서면조사,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 등**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**6~10개월간의 조사**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, **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**에는 **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**의 **제재 조치**를 취할 예정임

【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】

□ 「과자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국내 중소기업인 ㈜서울식품공업이 자사의 과자 **상표권을 침해하여 베트남에 수출**한 국내 기업 '다', '라'의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된다고 **주장**하면서 **조사를 신청**한 건임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인(㈜서울식품공업)과 피신청인(국내기업 '다', '라')을 대상으로 **약 6개월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**,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**판정**하였음

○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(국내기업 '다', '라')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, 국내기업 '다', '라'에 **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,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**와 **과징금**을 **부과**하였음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**국내**의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 등 **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**은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**에 **해당**된다면서,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**지재권 인식 부족**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**각별한 관심**을 가져줄 것을 **당부**하였음. 끝.

붙임 : 1. 「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」 조사 개요
2. 「과자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붙임 1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**(신청인)** 와이어쓰 엘엘씨(Wyeth LLC)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 기업 '가' 및 '나'

○ **(조사개시결정일)** '20. 01. 03.(금)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(의약품) 또는 이를 생산할 목적으로 제조한 반제품

○ **(신청이유)** 해당 특허권*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해외로 수출('18년 이후 총 5,926만원)

* (명칭)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-단백질 접합체 조성물(특허 제1298053호, 등록일: '13.08.13.)

< 특허권의 주요 구성 및 조사대상물품 >

특허권의 주요 구성	조사대상물품
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비히클과 함께, 13개의 다른 다당류-단백질 접합체를 포함하고, 이때 각각의 접합체가 CRM_{197} 운반체 단백질에 접합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애(Streptococcus pneumoniae) 유래의 협막 다당류(capsular polysaccharide)를 포함하며 상기 협막 다당류가 혈청형 1, 3, 4, 5, 6A, 6B, 7F, 9V, 14, 18C, 19A, 19F 및 23F로부터 제조되는, 폐렴구균 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13가 면역원성 조성물.	백신의 제형화를 위해 '주사용수'를 포함하며, CRM_{197} 단백질에 13개의 상이한 혈청형 다당류(1, 3, 4, 5, 6A, 6B, 7F, 9V, 14, 18C, 19A, 19F, 23F)가 개별적으로 접합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

□ 향후계획

○ 양 당사자 **의견 교환**, **기술 설명회** 및 **현지조사** 등 진행 후 **무역위원회**에서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**('20.6월 이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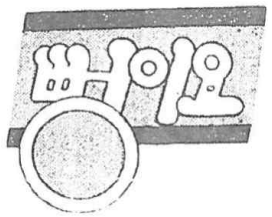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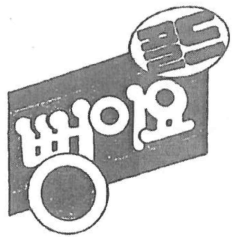
붙임 2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**(신청인)** ㈜서울식품공업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 기업 '가' 및 개인 사업자 '나'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건과자(HS코드: 1904.10.9000, 1905.90.1090)

신청인 등록상표	조사대상물품 사용상표
 제0177333호	
 제0430035호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9.7.2.), 조사개시결정('19.7.29.)

○ 서면조사('19.7~11월), 현지조사('19.10월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과자를 제조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·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